제336회 정례회 2014.12.09.(화)

# 심사보고서

O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교 육 위 원 회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4.12.09.(화)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4년 11월 04일

다. 회부일자: 2014년 11월 06일

라. 상정일자: 2014년 11월 25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O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충청북도조례 제3635호)가 2014. 5. 8.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대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다음의 업무를 변경함(안 제5조)
  - 가) 관할학교의 학급 배정 업무를 삭제함(안 제5조제11호)
  - 나) 교육장의 업무로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 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 내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를 추가함(안 제5조제 31호가목)
  - 다) 교육장의 업무로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 수·복무·근무성적평정을 추가함(안 제5조제31호나목)
-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 평정을 추가함(안 제6조제9호)
-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 성적평정을 추가함(안 제7조제7호)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5호, 제8~10호, 제21~22호, 제27호)

## 3.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정대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4. 1. 24.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2014. 5. 8.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대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와 관련한 교육장의 업무로 안 제5조제31호 가목에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전보·임 지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31호나목에는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 평정을 추가함.
- 또한, 안 제6조제9호 및 제7조제7호를 통하여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추가함.
- 이 밖에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관할학교의 학급 배정 업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등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한다)"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 제22호 및 제27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 전보·임지지정· 휴직·복직·해고·징계
- 나.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제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교육연구기 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전문 경력관의 경우 나군)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보직부여·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 면직·퇴직·대우공무원 선발·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5.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도서관, 학생회 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b>지역교육청</b>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8. 교육지원청
9. <b>지역교육청</b>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 정·정기승급	9. <u>교육지원청</u>
10. <b>지역교육청</b>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0. <u>교육지원청</u> ————————————————————————————————————
11. 관할학교의 학급 배정	< <u> </u>
12. ~ 20. (생 략)	12. ~ 20. (현행과 같음)
21. <b>지역교육청</b> 및 소속기관의 동종· 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및 승인	21. 교육지원청 
22. <b>지역교육청</b>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22. <u>교육지원청</u> 

현 행	개 정 안
23. ~ 26. (생 략)	23. ~ 26. (현행과 같음)
2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         지급	27. 교육지원청 
28. ~ 30. (생 략)	28.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 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근로 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 전보·임지지정·휴직·복 직·해고·징계 나.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학교장에게 위암하는 사항)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소속 근로자의 보수 복무 근무성적평정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속 근로자의 보수 복무 근무성적평정

#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39조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